

민선 8기 공약사업 방침 결정 보고

-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'23년 4분기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 사업에 대한 최종 방침 결정을 받고자 함.

1. 공약사업 개요

□ (공약1) 골프장 유치

- 사업기간 : 2022. ~ 2026.(5년)
- 사업위치 : 평창읍 종부리 일원
- 주요내용 : 민간기업(평창위케이션&라마다여수) 골프장 유치

□ (공약2) 구)진부비행장 종합개발계획 수립

- 사업기간 : 2023. 1월 ~ 2024. 12월
- 사업비 : 55백만원(군비)
- 사업위치 : 진부면 상진부리 247-63 일원
 - 면적 : 80필지(70,466㎡, 21,315평)
 - 국유지 : 국방부 5필지(9,476㎡), 기획재정부 등 16필지(20,456㎡)
 - 군유지 : 11필지(9,668㎡)
 - 사유지 : 48필지(30,866㎡)
- 주요내용 : 구)진부비행장 일원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

2. 추진상황

□ 골프장 유치

- 골프장 유치 예정 부지 검토(평창읍 종부리 일원) : 2022. 8월 ~

□ 구)진부비행장 종합개발계획 수립

- 진부비행장 폐쇄 결정 : 2019. 11. 12.
- 공공기관 및 투자유치 건의(도 역세권 개발팀) : 2021. 2월
- 구)진부비행장 일원 공유재산 매입 계획 수립 : 2022. 2. 23.
- 진부비행장 매입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 : 2022. 3월

- 군사시설(기상관측장비)이전 협의 : 2023. 2월
- 구)진부비행장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의 : 2023. 3월
- 구)진부비행장 항공기상관측장비 이전 부지(대관령면 유천리) 하천점용 허가 완료 : 2023. 5월
- 구)진부비행장 항공기상관측장비 이전 공사 완료 : 2023. 12월
- 구)진부비행장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명시이월 : 2023. 12월
 - ※ 동일부지에 대한 타 부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 미완료로 인하여 '23년 사업비 명시이월

3. 문제점

□ 골프장 유치

- 골프장 유치의 경우 민간기업의 투자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골프장 부지 및 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함
- 현재 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인해 골프장 조성에 투자가 가능한 민간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

□ 구)진부비행장 종합개발계획 수립

- 구)진부비행장 부지를 타 부서 사업대상지 중 하나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됨
- 구)진부비행장 일원 부지 중 국방부 소유 토지는 공익사업의 목적으로만 매입이 가능함 ※ 민간기업의 사업을 위해서는 매입 불가
 - 공공기관 사업이 아닌 이상 기업유치 부지로 활용은 어려움
- 공익사업을 위한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 과정 및 우리군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익사업 발굴이 필요

4. 검토의견

□ 골프장 유치

- 당초 공약사업 골프장 유치 사업의 경우 기존 노람뜰 일원 호텔 사업을 추진하던 평창위케이션&라마다 여수에서 평창 관광 레저타운과 연계된 골프장을 개발하려던 사업으로 사업자가 호텔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골프장 유치도 어렵게 되었음 ※ 붙임 골프장 유치 사업 대상지 현황 참고

□ 구)진부비행장 종합개발계획 수립

- 현재 올림픽체육과의 평창 올림픽 어린이 캐릭터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과 대상지가 중복되고 있어 평창 올림픽 어린이 캐릭터공원 타당성 용역 결과가 구)진부비행장 부지 외 다른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구)진부비행장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을 검토 추진
- 다만, 우리군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익사업을 발굴해야 하므로 관련부서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

5. 방침 결정

□ 골프장 유치 : 추진불가

- 당초 평창 관광레저타운과 연계하여 골프장을 개발하려던 평창 위케이션&라마다 여수의 사업 포기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으며, 고금라 고물가로 인한 민간기업의 투자 심리 저조

□ 구)진부비행장 종합개발계획 수립 : 추진 불필요 또는 추진보류 및 담당부서 전환

구분	사유	국방부 토지	비고
추진 불필요	평창 어린이 캐릭터 공원 사업대상지가 구)진부 비행장으로 확정 시	공익사업에 해당하여 매입 가능	
추진 보류 및 담당부서 전환	평창 어린이 캐릭터 공원 사업이 <u>구)진부비행장 외 다른 사업대상지로 확정 시</u>	공익사업에 따른 매입을 위해 우리군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익사업 발굴이 필요 공공기관 사업이 아닌 이상 기업유치 부지로 활용 불가	관련부서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